**삼성전기 대금지불방법 안내**

**- 상생결제시스템 /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-**

1. 대금지급 FLOW

③구매내역 송부

⑦만기일 대금결제

**약정은행**

**삼성전기**

④채권양도 통지

⑥대금지급

②물품대금채권양도

⑤대금지급요청

①납품 및

계산서 발행

**협력회사**

1) 상생결제시스템

    -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(하기 참조)의 구조와 동일하면서

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에 외상매출채권 발행時 2차협력사도 삼성전기의

신용도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

(1차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 통해 외상매출채권 발행時 세액공제 적용)

☞ 신규등록하는 모든 원자재/외주/설비 협력사는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

지불하므로, 우리은행 「상생파트너론」약정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

2)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(B2B 대출거래시스템)

    - 구매기업이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며,

     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인터넷뱅킹에서

      대출이 가능한 서비스

    - 특징

    ㆍ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한 은행을 제휴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인

자금운용 가능

    ㆍ당사의 신용에 의한 금리결정으로 저리의 자금 이용가능

    ㆍ협력회사의 자금필요에 따라 분할대출 가능

2. 작성서류 및 구비서류안내

  1) 삼성전기 제출용

    「삼성전기 제출용」서류는 삼성전기로 직접 우편발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       ① 수금용 결제계좌 신고서 1부

       ② 대금지급약정서 1부

       ③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 원본 1부 (3개월이내 발행본)

       ④ 원본대조필(법인인감 날인)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       ⑤ 결제계좌통장 사본 1부

(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과 동일, 상이시 사용인감계 제출)

       ⑥ 국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

⑦ B2B 체결 확인서 1부

        \*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날인한 인감은

          법인인감증명서(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)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하며,

          계좌는 하나/우리/기업은행만 이용 가능합니다.

  2) 금융기관 제출용

   - 해당구비서류준비(선택한 금융기관에 따라 준비- 은행에 개별 문의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 분** | **금융기관** | **이용가능계좌** | **구비서류** |
| 상생결제시스템  (상생파트너론) | 우리은행 | 우리은행계좌 | 각 은행별 안내문 참조 |
| 외상매출채권  담보대출제도  (B2B대출거래) | 하나은행 | 외환은행계좌 |
| 우리은행 | 우리은행계좌 |
| 기업은행 | 기업은행계좌 |

   - 서류 작성이 끝나면**「금융기관제출용」서류는 현재 거래 중 이거나 가까운**

**은행 영업점에 제출 및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**※ 주의사항**  
 **- 하나은행 외담대 체결의 경우 [금융거래정보제공] 동의 必**

**- 하나은행 중심업체코드는 아래 2개 코드 중 택 1 (상환청구권 여부는 은행과 협의)**

**상환청구권 "N" 중심업체코드 K8677 / 상환청구권 "Y" 중심업체코드 K8678**

**- 기업은행의 경우 [삼성전기전자어음서비스]로 약정하셔야 합니다.**

**- B2B대출거래약정은 위 3개 은행 中 1개의 은행에 등록하셔야 하며,**

**복수의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**

**- B2B대출거래약정은행과 결제계좌의 은행은 동일한 은행이어야 합니다.**

3. 당사 대금지불 규정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 분** | **세금계산서 발행일** | **대금지불일** |
| 1 차 | 1일 ~ 10일 | 당월 20일 |
| 2 차 | 11일 ~ 20일 | 당월 30일 |
| 3 차 | 21일 ~ 말일 | 익월 10일 |

 ※ 지급일 휴무일인 경우(토/일/공휴일) 직전 영업일에 지급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결 제 형 태** | 전자결제를 통한 결제 | |
| **결 제 방 법**  **및**  **만기일 지정** | 중소기업 [전액 현금결제] | |
| 상호출자제한기업 [대금지불일기준 90일]     ㆍ300만원 미만 → 현금결제     ㆍ300만원 이상 → 만기결제 | |
| **결 제 계 좌** | 상생결제 | 우리은행 |
| B2B | 우리, 외환, 기업은행 |

※ 결제기준 300만원은 회사의 회계단위(BA)별 마감금액을 의미합니다.
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대기업,중견기업은 90일 만기결제